

집합규약 변경대비표

1. 투자신탁의 명칭: 아라 멀티 전략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 1 호

2. 집합투자규약 변경 사유:

- 법 개정에 따른 신설조항 반영, 삭제조항 반영
- 투자운용성과 최신일(2022.02.28)자로 갱신

3. 약관변경 시행일: 2022년 04월 15일

4. 약관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p>제2조</p> <p>3. “영업일”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한다.</p>	<p>제2조</p> <p>3.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p>
<p>제21조</p> <p>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환매청구를 할 수 있으며 15시30분까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한다). 환매청구일에 대한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하고 매년 12월말은 한국 거래소의 최종개장일을 최종영업일로 한다)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15시30분 이후에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일의 다음 영업일에 환매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p> <p>②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T+2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T+3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본 항에서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p>	<p>제21조</p> <p>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환매청구를 할 수 있으며 15시30분까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한다). 환매청구일에 대한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하고 매년 12월말은 한국 거래소의 최종개장일을 최종영업일로 한다)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15시30분 이후에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일의 다음 영업일에 환매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p> <p>②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T+2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T+3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본 항에서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p>

<p>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하고 매년 12월은 한국거래소의 최종개장일을 최종영업일로 한다)로 한다.</p> <p>제24조</p> <p>①~⑤ <생략></p> <p>⑥ 이 투자신탁은 법 제24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47조의 신탁업자의 운용행위감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는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신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2조</p> <p>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p> <p>제37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신설></p>	<p>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하고 매년 12월은 한국거래소의 최종개장일을 최종영업일로 한다)로 한다.</p> <p>제24조</p> <p>①~⑤ <현행과 동일></p> <p><삭제></p> <p>제32조</p> <p>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p> <p>제37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현행과 동일></p> <p>③ <현행과 동일></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전체 수익자동의를 얻은 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에서 제32조와는 별도로 다음 호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p>
--	---

	<p>한다.</p> <p>1. 변경된 신탁계약의 시행일 전일에 해당일의 순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2개월분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또는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본 조 제4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	---